

2026년도

두호항·환호항·여남항 어촌뉴딜3.0사업
(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3.

poohang 포항시

목 차

I. 과업의 개요	3
II.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6
2. 세부 과업내용.....	15
III. 성과품 제출 및 정산	
1. 성과품 제출	25
2. 대금지급	27

I .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두호항·환호항·여남항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용역

2. 대상지 개요

- 사업명 : 두호항·환호항·여남항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항·환호항·여남항 일원
- 사업내용 : 생활 SOC - 해안도로 정비, 주차장 확장, 마을안길 정비, 보안등 설치
어항정비 - 항내 준설
청정환경 - 공동작업장 조성, 포켓쉼터 조성, 커뮤니티 스페이스 조성, 호안 정비, 어린이공원 조성
- ※ 본 사업은 예비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됨 (지역 여건 및 기본계획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3. 과업목적

-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을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 도모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 활력 제고
- 두호항·환호항·여남항 일원 관광·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SW사업 계획을 통해 인근 연계사업과 더불어 영일만 어촌의 시너지 효과 창출 도모

- 3 -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포항시 북구 두호항·환호항·여남항 일원 (예비계획 참고)
 - 면적 : 약 167,621㎡
- 시간적 범위(사업)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9년
- 내용적 범위
 - 1) 대상지 지역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2) 기본구상
 - 3) 재정사업계획 수립
 - 4)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 5) 전문가 활용
-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활성화 및 의견수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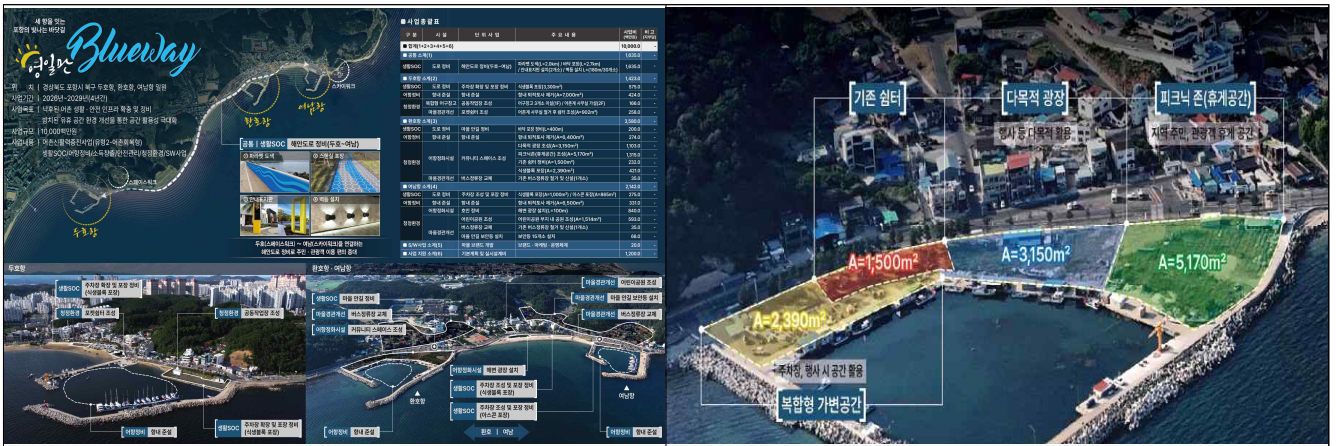
- 4 -

6. 설계변경 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용역수행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2)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과업대상위치 및 주요 시설 개요(예비계획 기준)



II.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 1) 본 과업은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추진절차와 이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 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2) 과업의 내용은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의 추진특성 상 지역협의체 논의 및 심의·조정위원회, 지역심의단, 갈등관리 자문단, 소득사업 평가·심의 위원회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변경될 수 있다.
- 3) 계약상대자는 기존 어항 관련 계획의 내용 및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 등 사업관련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4) 계약상대자는 기존 어촌, 어항 관련 개발계획의 내용, 기타 대상지 관련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토목, 건축, 조경 등 각 분야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의 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기준

- 1) 각종 규정 및 법령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법령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또는 SI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1.4 비용(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1) 노임단가 : 과업준공시의 학술연구용역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에서 조사·공표한 노임
- 2) 환율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
- 3) 중기사용료 : 과업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 4)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 5)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적산기준,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
- 6)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의하여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 2) 현지조사 세부 시행계획
- 3)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세부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4) 관계기관 협의사항
- 5)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6) 본 과업에서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의 사업추진협의체 및 시·도지사 의견 수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착수신고서
 - (2) 용역 예정공정표
 - (3) 용역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4) 기타 법령이나 과업설명서에 정한 사항

1.6.2 과업수행계획서

-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세부공정계획서
 -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 (4) 용역 참여수행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현재 참여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5) 용역수행자의 보안각서
-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

1.6.3 보고사항

1) 공정보고

매주 목요일에 주간, 당월 25일까지 월간 공정보고(공정내역 및 진도 등)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수시보고

- (1) 과업 착수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중간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최소 1개월 이전에 최종 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추진점검회의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 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 공정 별 1회~2회 개최 예정)

4)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를 납품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 주민과의 협의과정, 진행사항 등을 진도보고 시 그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7 과업 관리

1) 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담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함)를 임명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9 -

- (1) 참여인력 동원현황
- (2) 기본계획 수립 진행현황
-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점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실적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8 자료요구·질의 등

-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과업 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 (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안) 수립 후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완료는 해양수산부 및 관할시군의 기본계획관련 심의승인을 득한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한다. 단, 건축기획 관련 공공건축심의 또는 설계공모 대상인 경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득한 시점을 최종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시점으로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설명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관계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사전검토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필요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실과협의 문서를 작성하여 협의 실시

2) 관련기관과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타 부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과업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 시까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11 -

1.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용어의 해석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3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12 -

-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1) 한글 맞춤법(교육부)
 -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 (1) 과업설명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도서”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 (2) 주어의 명확화
 -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등 주어 명시
 - (3) 약어사용
 -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13 -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1.14 참여인력의 교체

- 1) 참여인력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 참여인력 중 제안서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자(PM)과 분야별 책임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5 기타 사항

- 1)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3) 기본계획 및 컨설팅에 관련된 자문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한다.
- 4)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5) 과업 수행 시 필요로 하는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과업기간 내 사업추진협의체 회의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14 -

2. 세부 과업내용

2.1 기본계획 수립

2.1.1 과업 세부내용

1) 대상지 지역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1) 사업대상지의 경제·사회적인 중심지 기능을 설정하고, 공간위계에 따른 배후지역과 공공·상업서비스 기능 분담에 대한 공간개념 설정과 세부적인 특성을 제시한다.
- (2)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인구동태 코호트, 1인 가구 등)의 최소 10년 이상 시계열 현황과 추세분석을 통해서 사업대상지의 여촌 경제거점으로써 위상과 발전 가능성 등을 진단하여 제시한다.
- (3) 인구분야에서 사업지의 위상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위에 위치하거나 여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4) 사업대상지의 향후 30년 기간의 장래인구·가구 전망결과를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와 객관적인 인구추계 방법론을 통해서 추정하여 제시한다.
- (5) 사업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등의 현황 및 민간투자와 재정사업 연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6) 사업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보건복지, 교육, 의료, 정주, 문화여가 등 생활SOC 시설의 분포와 도달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7) 생활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취약하여 사업대상지 외부로 이용하는 경우 실태와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8) 대상지의 과거부터 현재시점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전체적인 산업구조 변화와 변동요인, 산업적 특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 15 -

- (9) 어업생산 규모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1차 산업 진단과 변화, 어업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제조·가공 등 2차 산업 진단과 변화, 사업대상지 내 유통,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진단과 변화를 제시한다.
- (10) 수산업 업종별, 품목별로 수산업 여건과 진단을 통해 여촌 경제활동의 중심성 여부, 산지위판 이후 지역 내 소비, 타 지역 유통 등 수산물류 구조를 세부적으로 진단하여 제시한다.
- (11) 대상지 내 국민의 레저여가 활동과 연계하여 관광자원과 지역분포,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단기 관광수요)를 통해 여촌 경제거점지역의 관광수요와 향후 전망결과를 제시한다.
- (12) 대상지 내 해역과 육역의 물리환경 여건을 진단·분석하여 개발 가능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13) 대상지의 해상교통(여객선, 차도선 등) 여건과 타 지역과의 연결성 및 육상교통(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여건과 타 지역과의 연결성을 진단
- (14) 여촌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토지이용 실태 및 여건변화 진단하여 부지확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를 도면화하여 제시한다.
- (15) 대상지의 어항구역 내 시설재원, 기능편익시설 등 인프라 현황과 활용성, 어항구역을 제외한 유희시설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 현황과 활용성 등을 제시한다.
- (16) 사업대상지와 상위계획, 관련계획 개발방향과 사업내용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간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17) 사업 추진경위 및 이해관계자 협의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제시한다.

- 16 -

2) 기본구상

- (1) 대상지의 현황과 여건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촌의 미래상과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 대상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결과지표로 제시하고, 주요시점에 대한 달성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030년까지 달성정도 제시)
- (3) 비전·목표와 단위사업 간 연계성과 논리적 구조로 전략체계를 제시한다.
- (4) 재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한다.
- (5) 대상지 내 재정사업, 기 투자사업 간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평면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사업비는 사업조성, 운영관리, 부대비용 등을 종합·추계하여 제시한다.

3) 재정사업계획 수립

- (1) 민간투자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공공부문 마중물 뒷받침 사업계획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 개발목표는 재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지표와 정량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여 추구하는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3)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에 맞춰 사업개요(시설별 개요 및 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명은 사업성격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4) 대상지 위치는 사업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와 지번(도로명)까지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시한다.
- (5) 재정사업의 법적검토, 용도지역, 건축조경, 고도제한, 인·허가 절차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시 지연 또는 사업 불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 17 -

- (6) 어항구역(육역, 수역) 내에 개발사업 추진 시 「어촌어항법」 제23조 사업시행 허가에 대한 검토사항과 이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7) 재정사업의 배치계획(공간배치 컨셉), 평면계획(마스터플랜), 건축계획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
- (8) 단위사업계획은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개별 도입시설에 대한 필요성(실태, 문제점 등 객관적인 타당성 입증 필수), 사업개요(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 (9) 총괄사업비는 건설자재, 인건비 등 물가 변동성을 충분히 연도별로 상세하게 제시한다.
- (10) 재정투자가 관련 법률 검토 및 선제적인 필요한 조치사항(토지확보, 민원사항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연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11) 재정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타 부처사업 제시하고 타 부처의 연계사업이 공간, 기능, 거버넌스 등에서 시너지 효과 등 검토하여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12) 사업지 대상지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사업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해당 실과 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 (13) 건축물 신축, 생활 SOC 설치, 공공시설물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 추정이 가능한 규모 및 용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사업대상시설(건축물)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 제2항의 기획업무 (대가 III) 수준으로 수립하고, 규모검토서,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프로젝트 공정표 등을 기본계획 보고서에 포함할 것(작성도면에 한해 CAD파일을 용역성과 이동식저장장치에 첨부)
- (14)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사업(추정 건축 총 설계비 1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15) 기본계획 심의 전까지 관계기관(부서)와 실무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18 -

4)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 (1)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과 사업집행 및 성과관리체계 등 정책적 부합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2)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의 편익과 비용 산출을 통해 B/C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 (3) 주요 도입시설 및 시설 간에 연계를 통해서 예상되는 다양한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정량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인 효과를 제시한다.
- (4) 사업효과의 목표치 달성 정도를 경과(산출지표) 설정을 통해 일정주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5) 전문가 활용

- (1) 계약상대자는 건축설계(설계비 1억원 이상) 발생 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업무기준의 공공건축가 활용 의무화’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관리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위촉한 공공건축가가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2) 건축, 항만설계, 경관계획 등 전문분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계획수립 및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 시키도록 한다. 특히, H/W 기본계획 구상 시 관련 법률검토 및 엔지니어링 검토를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해야한다.
- (3) 전문가(공공건축가 포함)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경우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자문회의록은 전문가의 서명을 날인하여 기본계획 보고서 부록에 첨부한다.

6) 기타

- (1)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동법 시행령 제 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6조에 의거하여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포함될 경우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검토하고,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발주공사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함

- (2) 시설물의 개발계획수립 시 “기본 및 실시설계 낙찰자”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조정이 안될 경우에는 발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3) 지역역량강화사업 계획 시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지자체)”과 협의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4) 기본계획 수립 시 링커조직 발굴·육성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업을 포함한다.
 - 과업기간은 링커조직 발굴·육성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 기본계획 수립(심의통과 및 고시) 이후 링커조직 발굴·육성 및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업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모니터링 포함)

2.1.2 과업 세부내용 (예비사업계획서 기준)

■ 사업총괄표			
구분	시설	단위 사업	주요 내용
■ 합계(1+2+3+4+5+6)			
■ 공통 소계(1)			
생활SOC	도로 정비	해안도로 정비(두호~여남)	파라펫 도색(L=2.0km) / 바닥 포장(L=2.7km) / 안내표지판 설치(2개소) / 벽등 설치 L=(180m/30개소)
■ 두호항 소계(2)			
생활SOC	도로 정비	주차장 확장 및 포장 정비	식생블록 포장(3,300m ²)
어항정비	항내 준설	항내 준설	항내 퇴적토사 제거(A=7,000m ²)
청정환경	복합형 어구창고	공동작업장 조성	어구창고 3개소 이설(1F) / 어촌계 사무실 가설(2F)
	마을경관개선	포켓쉼터 조성	어촌계 사무실 철거 후 쉼터 조성(A=902m ²)
■ 환호항 소계(3)			
생활SOC	도로 정비	마을 안길 정비	바닥 포장 정비(L=400m)
어항정비	항내 준설	항내 준설	항내 퇴적토사 제거(A=6,400m ²)
청정환경	어항정화시설	커뮤니티 스페이스 조성	다목적 광장 조성(A=3,150m ²)
			피크닉존(휴게공간) 조성(A=5,170m ²)
	마을경관개선	버스정류장 교체	기존 쉼터 정비(A=1,500m ²)
			식생블록 포장(A=2,390m ²) 기존 버스정류장 철거 및 신설(1개소)
■ 여남항 소계(4)			
생활SOC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및 포장 정비	식생블록 포장(A=1,000m ²) / 아스콘 포장(A=865m ²)
어항정비	항내 준설	항내 준설	항내 퇴적토사 제거(A=6,500m ²)
청정환경	어항정화시설	호안 정비	해변 광장 설치(L=100m)
		어린이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부지 내 공원 조성(A=1,514m ²)
	마을경관개선	버스정류장 교체	기존 버스정류장 철거 및 신설(1개소)
		마을 안길 보안등 설치	보안등 15개소 설치
■ S/W사업 소계(5)		마을 브랜드 개발	브랜드 · 마케팅 · 운영체계
■ 사업 지원 소계(6)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 상기 과업 세부내용은 예비계획 수립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2.1.3. 예정공정표

구분	단위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비고
1. 지역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1식	■									
2.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구상	1식		■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계획수립	1식			■	■	■	■	■	■		
4. 재정사업계획 수립	1식			■	■	■	■	■	■		
5. 타당성 검토 및 기대효과	1식							■	■	■	
6.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자문	1식								■	■	
7. 링커조직, 사회혁신 프로그램	1식	■	■	■	■	■	■	■	■	■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1.1 일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는 사업추진협의체와 발주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기초조사, 분석, 기본방향, 계획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과업 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 출처,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사용한 모든 자료 및 내용 등은 이동식저장매체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인정하며, 필요수량은 발주기관 협의에 의해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수 량	규 격	제 출 일	비 고
1. 기본계획 보고서(안)	10부 (컬러본)	A4	완료 30일전	- 행정 협의용
2. 기본계획 보고서	20부 (컬러본)	A4 (부속도면: A3)	완료시	- 도면 및 요약서 포함 (부속도면 별도제출)
3. 회의자료	필요부수	A4 (부속도면: A3)	회의 시	
4. 전체용역성과 (이동식저장매체)	2개	한글파일, PPT, CAD	완료 시	
5. 과업관련 수집자료	1식	원본파일	완료 시	- 현황사진 포함
6. 사업종합계획도	1식	A1	완료 시	

2. 대금지급

2.1 일반사항

- 용역대가 최종 지급 시기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 과업수행 시 필요로 하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우리 공단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 세부 정산기준은 과업 착수 전 발주처와 협의한다. 사전협의 되지 않은 정산금액의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25 -

[첨부]

보안각서

○ 계약명: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체결 한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계약을 시행하면서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 교육을 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의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범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포항시 (분임)재무관 귀하